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경 찰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업무대행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

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(2024. 11. 00. ~ 2025. 1. 00.)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3의 제목“(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)”을“(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의3(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) ① (생략)	제30조의3(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② ----- --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----- ----- -----.
1.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	<삭 제>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(이하 “질병휴직”이라 한다) 중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	
나. 육아휴직	
2. 제1항제2호에 따라 병가, 출산휴가,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	<삭 제>

